

2020년도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

(’20. 2. 19. 게시)

질의내용	부대조항 No.	답변
컨테이너 세척료 지급주체	컨테이너 24	- 화물차주가 운반해온 공(empty)컨테이너의 상태가 불량하여 세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화주가 공컨테이너 인수를 거부함으로써 화물차주의 컨테이너 운송 및 대기 등이 발생할 경우(수출 컨테이너의 경우에 해당)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세척료 부담주체는 선사가 됨
계도기간(’20년 1~2월) 중 안전운임 지급 위반행위에 과태료 부과여부	-	- 계도기간 중 안전운임을 위반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3월 이후 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 가능
심야 할증 적용방법	컨테이너 8 시멘트 6	- ‘화주의 요청’에 의해 ‘심야시간(22시~06시)’에 운행할 경우 화주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증(컨테이너 20%, 시멘트 10%)을 적용하여야 함 - 전체 운행시간 중 일부 운행시간이 심야에 해당하는 경우, 총 운행시간 중 심야 운행시간의 비율만큼 할증 적용 (예시①) 컨테이너 4시간 운행 중 심야 1시간 운행 → $20\% \times 1/4 = 5\%$ 할증 (예시②) 컨테이너 4시간 운행 중 심야 2시간 운행 → $20\% \times 2/4 = 10\%$ 할증
화주의 요청이 아닌 심야운송 시 할증 적용	컨테이너 8 시멘트 6	- 심야 할증은 화주의 요청으로 발생한 운행에 대해 화주가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 - 안전운임 위반 신고 시 화주의 요청이 있었다는 증빙(화주의 확인서)이 필요함

질의내용	부대조항 No.	답변
공휴일 할증과 심야 할증의 가산 적용여부	컨테이너 8 시멘트 5·6·9	- 컨테이너는 공휴일에 심야 운행할 경우 각각의 할증을 합산하여 적용 - 시멘트는 가산률이 가장 높은 1개 조항만을 적용
토요일 운행의 할증 적용여부	컨테이너 8 시멘트 5	- 토요일 작업은 할증 적용 대상(일요일/공휴일)이 아님
환적화물 운임의 공휴일·심야 할증 적용	컨테이너 8 시멘트 5·6	- 환적화물 운임에는 심야 및 공휴일 할증 미적용
화물차주에게 어음 수수료 공제 가능여부	컨테이너 21 시멘트 2	- 화물차주에게는 안전운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어음 수수료를 사전에 차감하여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전운임에 위배
CY운영 운송사의 상·하차료 수취	-	- 편도운임의 운송사 원가에는 인프라 투자·운영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도권 장치장(의왕ICD, 인천항, 인천신항, 평택항)에서 상·하차 인프라 설비를 운영하는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상·하차료를 수취하는 것은 중복수취에 해당되므로 안전운임에 위배됨
외국 선주/화주의 안전운임 미 준수 시 처벌여부	-	- 원칙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카고차량에 대한 안전운임 적용여부	-	- 카고 차량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 자동차로 운송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이 아님

질의내용	부대조항 No.	답변
거리별 운임(km) 적용 관련, 구간거리는 편도 거리인지, 왕복 거리인지?	컨테이너 28	- ① 안전운임에서 정한 거리(km)별 운임은 왕복운임임 - ② ‘구간거리’는 기점과 종점 간의 거리를 의미하며, 왕복운행거리는 구간거리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임 (예시) 부산항에서 A 지점까지의 왕복운임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네이버 지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측정한 ‘부산항 → A 지점 간 편도 거리’가 100km일 때, ‘구간 거리’ 100km에 해당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을 적용
거리별 운임 산정 시, 항만 내 터미널별로 거리 선정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지	컨테이너 28	- 운임 계산의 편의를 위해 참고사항 1호 라목의 ‘항만 내 편도거리’를 항만별(부산북항·신항, 인천신항, 인천구항(ICT항), 광양항, 포항 영일부두, 군산항, 울산정일부두, 울산신항, 마산항)로 제공하고 있음
시내 운임의 거리 산정방법	컨테이너 28	- 거리별 운임(왕복)은 ①항만 게이트에서 시내 도착지까지의 구간거리, ②‘항만 내 편도거리’(참고사항 1호 라목 참고)를 합산하여 총 구간거리를 산정한 후 거리별 운임표 상의 동일 구간거리에 해당하는 운임 적용
거리별 운임 적용 후 도로상황 개선으로 운송거리가 줄었을 경우 운임 변경 가능여부	컨테이너 28	-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변경된 거리로 운임을 재산정(재계약) 가능
거리 측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네이버 지도 어플리케이션’의 구간거리 측정 시점	컨테이너 28	- 운송 전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측정 시점과 구간거리를 결정해야 함

질의내용	부대조항 No.	답변
화물차주 대상 비용 청구	컨테이너 21 시멘트 2	-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운송 물량을 제공·위탁해주는 대가로 받는 금액을 안전운임 산정 시 운송사 원가·이윤에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성격에 해당하는 주선료·관리비 등을 명칭에 관계없이 화물차주에게 수취하는 것은 중복 수취에 해당하므로 안전운임에 위배 - 이와 관련, 아래의 운송사 원가·이윤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별도의 서비스 제공 대가 청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이므로 중복 수취가 아님 * 운송사 원가·이윤 항목①(컨테이너·시멘트 공통) : 주선요금(물량 제공·위탁의 대가), 임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운전자금 이자비용(차주에게 운임 지급 후 화주에게 운임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비용), 보험료(사무실 화재보험 등), 감가상각비(차량 관련 감가상각비 제외), 업무추진비, 기타 비용(여비, 교통비, 통신비, 사무실 수도광열비, 사무용 차량유지비 등) * 운송사 원가·이윤 항목②(컨테이너) : 인프라 투자비(시설 및 부지 투자비용), 인프라 사용권 감가상각비, 인프라 운영비(컨테이너·철송화물 조작료, 창고 운영비용, CFS 사용료 등)
지입료는 번호판 이용료와 다른 뜻인지	-	- 지입료는 화물차주와 직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운수사업자가 차주 대신에 처리하는 행정절차 등에 대한 대가로 매월 차주에게 청구 혹은 공제하는 금액 - 번호판 이용료는 위수탁계약 시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불하는 1회성 금액

질의내용	부대조항 No.	답변
인천, 평택기점 왕복 운임 산정방식	컨테이너 13	- 거리별 안전위탁운임에 인천기점의 경우는 20%, 평택 기점의 경우는 18%의 할증을 적용하며, 안전운송운임은 거리별 운임에 안전위탁운임 할증 금액만큼만 추가하고 할증 미적용 (인천기점 운임 산정 예시) 할증 전 : 안전위탁운임 10만원, 안전운송운임 13만원 할증 후 : 안전위탁운임(10+2)만원, 안전운송운임 (13+2)만원
COMBINE 운송 시 20FT 컨테이너 2개의 중량합계 20톤 미만은 내 품 중량만을 의미하는지?	컨테이너 2	- 20FT 컨테이너 2개의 공컨테이너 및 내 품 중량 합계를 의미함
대기료 산정방식 (질문 : 컨테이너 화주 문전 도착 후 3시간 20분 대기한 경우)	컨테이너 9 시멘트 7	- 화주 문전 도착 후 40FT/20FT별로 3시간/2시간 경과 후 30분당 2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시간 20분 대기인 경우 40FT는 2만원, 20FT는 6만원 대기료 발생
차주가 화주 요청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의 대기시간	컨테이너 9 시멘트 7	- 차주가 화주의 요청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차주의 실제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대기시간 산정

질의내용	부대조항 No.	답변
직영 기사에 대한 안전운임 적용 여부, 화물차주와 월급제(월대)로 계약하였을 경우 안전운임 적용 여부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개인 운송사업자, 위·수탁 차주를 안전운임을 지급받는 ‘화물차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물차주’ 자격이 아닌 직영기사로 고용된 경우에는 안전운임 적용 대상이 아님 - 화물차주와 월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각 운송건별로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함 - 월대 계약 차주에 대한 안전운임 지급 위반여부는 증빙으로 제출된 운송정보를 검토하여 판단
화주가 차주와 계약할 경우의 운임 지급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3호에서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을 ‘안전운송운임’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화주가 차주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경우 안전운송운임을 지급하여야 함
안전운임제 상의 운수사업자 기준	-	-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를 의미함

질의내용	부대조항 No.	답변
국제물류주선(포워딩)의 지위	-	- 수출입 운송 전반을 책임지는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운수사업자에게 안전 운송운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화주로 봄 - 국내 운송면허를 가지고 국내 운송(통관 절차를 거쳐 국내 반입이 완료된 물품의 운송)만을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송사로 보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겸업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동일 화주의 수출·입 운송 건을 국내 운송구간과 해상 운송구간을 나누어 별도로 계약한 경우에도 수출·입 운송 전반을 책임지는 것으로 보아 화주로 봄
배차 취소료를 운행 거리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컨테이너 12 시멘트 10	- 부대조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차 취소료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기준 내에서는 이동거리와 무관하게 동일한 배차 취소료 적용
야간에 발생한 배차 취소료 산정	컨테이너 12 시멘트 10	- 야간 운행 중 발생한 배차취소의 경우, 야간 할증이 적용된 운임을 기준으로 배차취소료 산정
컨테이너 부대조항 12의 배차취소료가 적용되는 기준은 수출 운송형태. 수입 운송형태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컨테이너 12	- 컨테이너 배차 취소료는 수출 운송에 대해 규정함, 수입 운송의 배차 취소료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

질의내용	부대조항 No.	답변
천재지변 이외 안전 수칙 미준수, 사고 및 기타 사회 재난 등으로 인한 배차 취소, 회차 등에 대해서도 할증을 적용해야 하는지	컨테이너 12 시멘트 10	- 배차취소료의 예외 규정으로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한 불가피한 사태(천재지변) 이외의 경우는 정하고 있지 않음
중량물 할증에 해당하는 내품의 무게 기준	컨테이너 3·4 시멘트 8	-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도로통행에 제한을 받는 중량 기준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에 해당 - 차량마다 공차 중량이 다르고 공차 중량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내품 기준을 정할 수 없음, 중량기준 초과 및 할증 적용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에 현장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용오차를 적용하여 임의로 총중량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없음
제한차량운행허가의 갱신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화주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컨테이너 3·4 시멘트 8	- 화주가 실비 정산 청구를 받았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
환적화물을 편도 운영한 경우에도 왕복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	- 환적화물은 운행형태(편도/왕복)에 관계없이 운임표대로 지급해야 함

질의내용	부대조항 No.	답변
산간벽지 등 오지의 기준	컨테이너 6 시멘트 4	- 산간벽지, 오지의 경우는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간에 할증 적용 여부, 할증율을 협의하여 적용
대리석, 유리 등 보험특약 대상 화물 운송의 하증 여부	컨테이너 28	- 해당 할증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샤시 임대료 청구 대상은 누구인지	컨테이너 10	- 샤시 임대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
사사오입 적용 방법	컨테이너 30	- 운임표 상의 금액은 그대로 적용하며, 운임에 더해지는 추가 할증금액을 천원단위로 사사오입한 후 더하여 운임 산정(부가가치세 제외된 운임) (예시) 40FT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경우, 운임표 상의 운임은 123,456원이 고, 심야 할증 20%, 위험물 할증 30%이 적용된 경우 ① 할증률 계산 : $20\% + 30\% = 50\%$ ② 할증금액 계산 : $123,456 \times 50\% = 61,728\text{원}$ ③ 할증금액에 사사오입 적용 : $61,728 \rightarrow 62,000\text{원}$ ④ 운임 산정 : $123,456 + 62,000 = 185,456\text{원}$ (부가가치세 제외 운임)

질의내용	부대조항 No.	답변
컨테이너 할증 가산적용방법	컨테이너 18	- 적용되는 모든 할증률을 합산하며, 적용되는 가산률 중 가장 높은 가산률에 50%p를 더한 가산률을 상한으로 함 (예시) 화약류 할증 100%, 중량물 할증 40%(협의), 심야 할증 20% 인 경우 모든 할증률을 더하면 160%가 되지만, 가장 높은 가산률인 100%에 50%p를 더한 150%가 상한이므로, 150%를 최종 할증률로 함
유가 변동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참고사항>	- 매 분기 시작 15일 전에 유가 변동내역을 확인하고, 기준치 이상으로 변동 시 변동된 유가를 반영하여 운임 변경고시 예정
밥테일 작업의 할증 적용	컨테이너 11	- 밥테일 할증은 ①화주의 요청에 의해 ②왕복 운행을 2번(컨테이너 운송 1회, 빈 샤시 운송 1회) 하는 차주에게 적용
부대조항 14번(공장 등을 출발지로 하여 각 기점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는 해당 기점↔출발지 간 왕복운임 적용)은 거리별 요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인지?	컨테이너 14	- 해당 공장(출발지)이 위치한 시,군,구가 운임표 상의 행선지로 명시된 경우 해당 운임표의 운임을 적용하며, 운임표 상에 출발지가 행선지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거리별 운임 적용

질의내용	부대조항 No.	답변
기점이 긴급 변경되는 경우 서면 계약으로 기 견적금액으로 운임 지급 가능한지 여부	-	- 기점 변경에 따른 추가금액 지급 등은 안전운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
40FT~45FT 사이, 고객사 별도 제작 SOC 컨테이너 운임 적용 문의	컨테이너 31	- 비규격 컨테이너 운임은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컨테 이너 부대조항 31번 참고)
위험물/유해화학물질인 TANK 컨테이너 할증	컨테이너 4-1, 7	- 탱크 컨테이너는 위험물이 아닌 경우에 한해 할증이 적용되므로, 위험물인 탱크 컨테이너는 위험물 할증률인 30% 이상에서 협의하여 적용
공(empty) TANK 운송에도 30% 할증이 적용되는지	컨테이너 4-1	- 운송 전반에 걸쳐 내용물이 없는 빈 탱크운송의 경우는 할증 미적용 - 단, 왕복운송 시 운송구간의 1/2은 공(empty) TANK 운송이지만 전체 왕복 운임에 대하여 30% 할증을 적용하여야 함 (임의로 15% 할증 적용 불가)

질의내용	부대조항 No.	답변
일부 수출입 TANK 컨테이너 중 수출입 시 화주 및 수출입업자가 IMDG Code에 맞춰 CSC 인증된 'UN PORTABLE TANK'를 사용, 검사를 받아 지침상 '운반용기'로 규정되어 해당 운반 차량은 별도의 허가 및 밸브, 덮개 등 안전조치 없이 운반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할증 예외 대상이 되는지?	컨테이너 4-1	-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업무지침(이하 “허가업무지침”)의 적용 조건'과 '허가업무지침에서 정하는 탱크 컨테이너'를 구분할 필요. 이동탱크저장소의 유형에서 피견인형 중 컨테이너식인 경우라면 부대조항 적용(허가지침 [붙임] 그림7 참고)
위험물 적재 운반차량은 대부분의 안전조치가 화주에게 책임이 있는데, 위험물 할증 적용대상이 되는지? 유해화학물질은 별도 운송차량이 필요없는 경우 할증을 적용해야 하는지?	컨테이너 7	- 위험물 할증은 운반차량의 종류와 무관하게 컨테이너의 적재품이 '위험물'인 경우에 적용 - 운반품이 유해화학물질일 경우 운송차량에 무관하게 할증 적용
위험물인 냉동 컨테이너 할증	컨테이너 5, 7	- 위험물 30% + 냉동 30% = 60% 할증 적용

질의내용	부대조항 No.	답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자격이 있는 운송 기사 및 차량으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할증 적용	컨테이너 29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는 동법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법령을 위반한 운송에 대해서는 안전운임 고시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음
냉동컨테이너 발전기 미가동시 할증	컨테이너 5	- 냉동컨테이너의 발전기를 화주의 요청에 의해 가동하지 않을 경우(비 냉동/냉장 상태로 운송)에는 할증 미적용
운송사가 냉동컨테이너 발전기 및 트레일러 구매 시 냉동할증 30% 지급하여야 하는지	컨테이너 5	- 발전기 및 트레일러 구매 주체와 관계없이 냉동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경우, 부대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증을 적용해야 함
냉동 컨테이너의 발전기를 가동하며 대기 시 비용 산정	컨테이너 5, 9	- 냉동차량의 대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컨테이너 부대조항 9호의 대기료 조항을 적용할 필요
FLEXI BAG, Sea Bulk 컨테이너 운임	컨테이너 29	- 수출입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구간 형태에 따라 왕복 혹은 편도 운임을 적용하여야 하며, Flexi Bag, Sea Bulk 운송에 의한 별도의 할증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
20FT 전용 샤시 운임	컨테이너 10, 29	- 20FT 컨테이너 운임을 적용하여야 하며, 샤시 임대료(컨테이너 부대조항 10호) 외 20FT 전용 샤시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운수사업자 간 운임 지급 기준	-	- 운수사업자 간 운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질의내용	부대조항 No.	답변
안전운임 미지급 시 고발가능한 시효	-	- 위반행위 시점과 그에 따른 신고/과태료 처분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에서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
외화로 계약하였을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액 발생 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	-	- 환율 인상/인하에 관계없이 국내 운수사업자/화물차주에게 원화 단위로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함
당사자 간 합의하여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으로 계약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컨테이너 29	- 당사자 간에 합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므로, 추후 안전운임 지급위반 신고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제3자의 안전운임 지급위반 신고 가능여부	-	- 지급위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3자 신고 가능
안전운임 협의의 상한선이 있는지 여부	-	- 안전운임은 최소한의 운임이며,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질의내용	부대조항 No.	답변
온그라운드 운송, 복화운송, 공컨테이너 공급 운송, 다(多)착지 운송, 철송 연계운송(항만↔철도역 간), 화주·운송사 소유의 장치장을 이용한 운송 시 안전운임 적용 여부	-	-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왕복·편도 운송과 다른 형태의 운송이므로 유사 구간에 대해 고시된 왕복·편도 안전운임 등을 참고하여 이해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운임을 결정하여야 함
<참고> 온그라운드 운송		- 종점에서 컨테이너를 내려놓고 복귀 시에는 빈 샤시 또는 다른 컨테 이너를 싣고 운행하는 운송
<참고> 복화운송		- 기점A에서 출발(full)하여 종점B에 내품 (가)를 하차하고, 동일 컨테이너 (empty)를 싣고 C지점으로 이동하여 내품 (나)를 싣고 기점A로 이동 하는 운송
<참고> 공컨테이너 공급 운송		- 선사·화주의 공컨테이너 공급 요청에 의해 특정 지점으로 공컨테이 너를 옮기고 빈 샤시가 되는 운송
<참고> 다(多)착지 운송		- 기점 → 작업지A → 작업지B → ... → 장치장(컨 반납) 등 여러 지점을 경유하는 형태의 운송
<참고> 철송 연계운송(항만↔철도역 간)		- 항만과 철도역 간에 컨테이너를 운송하여 항만 또는 철도역에 컨테 이너를 내려놓고 빈 샤시가 되는 운송
<참고> 화주·운송사 소유의 장치장을 이용한 운송		- ① 온그라운드 운송(기점 ↔ ‘자가 CY’ 또는 ‘화주 공장’), ② 셔틀운송 (자가 CY ↔ 화주 공장)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운송